

의안번호	2206081
의 퇴 인	우재준 의원
회 답 일	2025. 1. 6.
추계번호	24B5579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(기능대학의 설립)	기능대학을 설립·경영하려는 자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거나 기능대학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(제5항)	의무규정
2	안 제39조의2(기능대학 분교의 설치)	기능대학을 설립·경영하는 자는 국내외에 분교(分校)를 설치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기능대학 분교의 설치·경영 인가, 설립기준, 폐지 및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. 이 경우 “기능대학”은 “기능대학 분교”로 봄(제2항)	의무규정
3	안 제50조(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)	교육부장관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능대학(국가가 설립한 기능대학은 제외한다)의 중요 사항 변경 인가에 관한 권한(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9조(기능대학의 설립)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·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	안 제39조의2(기능대학 분교의 설치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－ 본문 참조
3	안 제50조(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)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·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가 설치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의 개정조항은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으며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해외 분교의 설치 지역, 개소수, 설치 규모 등을 확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
 - 해외 분교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「에너지전환(원전)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」(2018.6.30)을 통해 추진한 KINGS(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)의 경우 에너지정책학과를 신설하여 UAE 및 사우디 등 원전수출국에 분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
 - 그러나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은 UAE 및 사우디 측과 KINGS(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)의 분교 설치 논의 초기 단계에서 당국의 교육기관 공증 등 제도상 어려움으로 추진이 중단되었고, 관련 예산·사업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힘
 -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